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[방문요양 · 방문목욕]

1. 계약기간

장기요양인정서 내 인정유효기간 내로 정한다.

2. 계약목적

- 1)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2)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[2025년 1월 1일 기준]

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재가급여 월한도액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						
방문요양	30분 이상	60분 이상	90분 이상	120분 이상	150분 이상	180분 이상	210분 이상	240분 이상	240분 이상
	16,940	24,580	33,120	42,160	49,160	55,350	61,670	68,030	검토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
방문목욕	목욕차량 이용 (차량내 목욕)	목욕차량 이용 (가정내 목욕)	목욕차량 미이용시
	86,480	77,970	48,690

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	재가급여
일반	15%
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 자)	9%
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,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 자)	6%
기초수급권자	0%

4.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

- 1) 신원인수인은 수급대상자(보호자)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.
- 2)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대상자(보호자)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- 3) 신원인수인은 수급대상자(보호자)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4)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5) 신원인수인은 수급대상자(보호자)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
5. 계약의 해제

수급대상자(보호자)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대상자(보호자)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대상자(보호자)에게 통지하여야한다.